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789 관 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5월 25일
제 안 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 및 처우개선 추진성과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‘처우개선위원회’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, 양질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
-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시행 예정임에 따라,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마련하되 ‘처우개선위원회’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은 삭제하는 것으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‘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’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 13조만 신설)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안 제13조를 (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)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~~다음 각 호의~~ 사항을 심의·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(~~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~~)를 둘 수 있다.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수정(제안)안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신설>	제13조(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) ①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 1.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2.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 3.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관련 법령 및 정책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	제13조(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)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.

1. 장기요양요원을 대표하는 사람

2. 장기요양기관을 대표하는 사람

3. 장기요양요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

5. 장기요양요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
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<신 설>

제14조(위원회 운영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,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,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.

1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2.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
3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3조 (생략)

제15조 (현행 제13조와 같음)

제14조 (현행 제13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,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안 제13조를 (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)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
관한 ~~다음 각 호의~~ 사항을 심의·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
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(~~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~~)를 둘 수 있
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<신·구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<신 설>	제13조(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)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